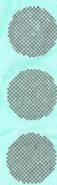


제2차

정세대응 여성 task force - 2차 전문가포럼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 <국방감독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3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오후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후원 : 여성부



정세대응 여성 task force - 2차 전문가포럼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와 대안 마련"

- <국방감독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일시 : 2003년 9월 23일(화) 오전 10시-오후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
- 후원 : 여성부



진행

- 사회 :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발제 1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실태 : 황학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
- 발제 2 :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 국방감독관 제도도입의 필요성:
안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방과제팀장/인하대강사)
- 토론 1 : 군폭력실태와 대안 : 이행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 토론 2 : 국방부 군폭력 근절정책 대안 :
독고 순(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사회학박사)
- 토론 3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군폭력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론 4 : 국방감독관 제도 : 권세기(국회 입법조사연구관/정치학박사)
- 전체토론



<발제 1>

군인의 전화를 통해 본 사병 인권의 현실

- 황 학 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 변호사)

들어가며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이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군인의전화를 운영해오고 있다. 군인의전화는 군조직 특유의 폐쇄성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군인(주로 사병, 전·의경 등 전환 복무자 포함)들을 여러 유형의 폭력과 인권유린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인권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군내 사망사고 및 폭력사고의 예방,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구조작업, 관련제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군인의전화에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들의 가족들이다. 현역 복무중인 피해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후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행동거지 또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 사건들의 대부분은 조기에 접수되기보다는 사안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나서, 또는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접수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는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일종의 불감증으로 몰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003년 9월 4일 현재 군인의전화에는 신규 3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세부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 20건, 구타사건 11건, 의료문제 2건, 신체검사제도 불합리로 인한 피해 2건, 기타 상담 2건 등이다. 군인의전화 접수 사건의 추이를 보면 지난 7월에만 총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는 7월 들어 온 사회가 일련의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군내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비난 여론이 들

뚫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관련 피해자나 피해 가족들이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은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군 조직이나 경찰 조직은 믿지 못하겠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정법상 조사권 한이 없어 사실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결국 돌고돌아 물어물어 오는 곳이 군인의전화라는 얘기다.

여기서는 군인의전화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사망사고를 제외한 대표적인 인권침해유형 3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를 통해 언급할 자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아래 3건에 대한 사례발표로 군조직이나 경찰조직을 통째로 매도할 생각은 없다.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3가지 유형의 인권침해사례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비단 아래 언급된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더욱이 이같은 인권침해사례는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인권침해유형은 군과 경찰에 별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례 1.

(가)부대에서 전경으로 근무하던 A 이경은 부대에 배치된 후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타를 당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3월18일), 이후 (나)부대로 전출을 갔다(4월 2일). 그러나 A 이경은 (나)부대로 간 지 2주가 못 되어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7월말까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부대에서는 A 이경이 전입을 온 후, 특별관리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빠른 적응을 위해 선임대원 B 수경을 불였으며,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일과에서 열외되는 대기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이경은 (나)부대에 와서도 구타를 당했으며, 집단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고참들이 “아침부터 널 보니 소화가 안 된다” “밥맛이 떨어진다”는 등의 말을 했고, △여러 고참들이 자기 잔반을 덜어주며 억지로 먹기를 강요해서 속이 쓰려 못 먹겠다고 하자 숟가락으로 퍼서 억지로 먹였으며, △한 고참은 “너 자꾸 미친 척 하면 다른 자대로 보내 버린다”고 말했고, △훈련 중 머리와 가슴이 너무 아파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하니, B 수경이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차며 아래도 아프냐면서 책을 얼굴에 던지고, 팔굽혀펴기와 피티체조를 시키고, 운동장 50바퀴를 돌게 했으며,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자살해 버리지 왜 사냐, 제대하고 사회 나가 널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부대측에서는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B 수경은 꾀병을 부리는 것 같아 몇 번 쥐어박은 적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사람을 보면 놀라고, 타인의 손이 몸 주변으로 갈라치면 방어자세를 취하고, 기억력 감퇴와 말을 더듬는 증세를 보이던 A 이경은 현재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거나, 부대 이야기만 나와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이경의 어머니는 A 이경을 부대로 다시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병세가 나빠질 것에 대한 염려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 A 이경은 부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의가사제대는 요건이 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부대로 복귀하더라도, A 이경을 돌 볼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다. 정상적인 일과를 진행하기에도 벅찬 일선 부대에서 A 이경은 사실상 ‘골칫거리’이며, ‘부담스러운 존재’인 것이다. (나)부대 지휘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A 이경이 특별관리(일과 중 열외)를 받고, 상대적으로 편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다른 대원들의 공공연한 불만이 잠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힘

든 일과 속에서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속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 이경처럼 구타 후유증으로 정신이상증세를 보이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전환장애’ 판정을 받는다. ‘꾀병’인지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꾀병’ 여부를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당국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A 이경 같은 피해자들의 재활과 정상적인 사회복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급한 것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당국자들의 인식전환과 구타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공상처리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다. 현재는 공상처리가 되더라도, 피해자들은 의무적으로 군(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에 대해 군(경찰)이 책임지지 않게 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군(경찰)병원의 현실은 열악한 수준이다. 사병들 사이에는 군(경찰)병원에서는 ‘칼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내려오고 있고, 심한 경우 군(경찰)병원에서 수술 받는 사람은 ‘실습용’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다. 군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군(경찰)은 적어도 위독하거나 장기간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민감한 병세의 환자의 경우, ‘권위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했으면 한다.

사례 2

강원도 (가)부대에 근무 중이던 A 이병은 지난 3월 투신자살을 기도했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으나 다리와 척추에 중상을 입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 이병의 진술에 의하면, 투신자살을 기도하게 된 배경은 B 병장 등으로부터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였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지난 1월, 100일 휴가를 나왔다. 그러나 휴가를 나오기 전 고참인 B 병장으로부터 "밖에 나가면 '나이트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게임에 내 계정을 만들고 레벨을 30까지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때문에 휴가의 대부분을 게임을 하는데 소모할 수밖에 없었다.
- △ B 병장과 줄곧 경계근무를 나갔다. 한 번은 초소에서 B 병장이 태권도 시범을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 △ 점호시간에도 한 고참으로부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적이 있다. 또 PX에서 '킹 오브 파이터스'라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지 못한다고 얻어맞았다.
- △ B 병장은 "내 앞에서는 항상 목소리를 크게, 동작은 빠르게 하라"면서, 점수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기본점수 80점에, 잘하면 점수를 주고, 못하면 점수를 깎는 식이었다. 70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알아서 하라고 했다.
- △ B 병장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전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갑을 꺼내 보여주었다. "왜 이렇게 동전이 많냐, 지갑 무겁지 않냐, 내게 좀 덜어줄게"하며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빼앗아 갔다.
- △ 훈련을 나가기 전 B 병장은 돈이 얼마 있느냐고 물었다. 훈련 중 간간히 먹을 음식을 사려고 한다면서 회비를 내라고 했다. 5,000원 정도를 냈다. 나중에 들으니 회비는 모든 분대원에게 걷었는데, 실제 사온 것을 보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A 이병은 이런 이유 등으로 대대장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후환이 두려워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가족 때문에 조기전역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 대대장은 이튿날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도록 지시했고, 정신과 군의관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전역은 안 된다고 말했다. 진료실을 나온 A 이병은 B 병장의 얼굴이 떠올랐고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치밀어 올랐다며 병원건물 4층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다.

이에 대해 현병대 측에서는 "B 병장이 휴가 중에 인터넷 게임을 하라고 한 것은 지시라기보다는 권유였다. 가혹행위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당시 B 병장은 A 이병 등 2명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둘 중 한 사병은 B 병장의 말을 따르지 않았지만 부대 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A 이병 소속 부대의 한 지휘관은 "A 이병은 원래 부대에서 게임을 잘 하기로 유명했다. 인터넷 게임 초보자인 B 병장이 A 이병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 뿐이다. 내성적인 성격의 A 이병이 B 병장의 말을 너무 곧이곧대로 받아 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신종 가혹행위라고 부르는 것은 좀 어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입온 지 얼마 안 된 A 이병이 B 병장의 언행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병들은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자대 생활을 시작한다. 신병들에게 있어서 말년 병장은 실상 '하늘같은' 존재다. 이런 상황에서 말년 병장의 권유는 신참 이병에게 명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A 이병이 이런 명령 등으로 인해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면 명백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다른 사람과의 단순 비교는 무의미한 것이다. 아무개가 유독 나약해서,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남들 다 견디는 것을 혼자 못 견뎌서… 하는 식의 사고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인권의식 제고와 함께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자세로 전환이 절실하다. 현재 A 이병은 의가사제대 결정이 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판례가 하나 있다. 지난 1999년 8월12일 천안경찰서 근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자살한 A 이경 사건(사건 번호 2002가합424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이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부 (재판장 손차준)의 판결에 따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소외 망인으로서도 피고 B, C, D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지휘관 등

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성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부분 인용)

바로 ‘책임의 제한’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위 이유 등으로 인해, A 이경의 과실비율은 80%로 잡혔고, 피고(가해자)들의 책임은 20%로 제한되었다.

이는 군인 인권 현실에 대한 사회의 불감증, 나아가 사법부의 무지를 보여주는 일단의 사례라고 보여진다. 이런 판례를 접하다 보면, 과연 재판부가 고도의 위계질서 사회인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았는지, 조직자체의 구타 방지 및 구조 시스템의 현실성을 고려해 보았는지, 나아가 사병의 입장에서 ‘병영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았는지, 아니면 이에 대해 면밀한 연구라도 해 보았는지 묻고 싶어진다.

사례 3

A 훈병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지난 2월 17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그러던 중 3월 15일 오른쪽 다리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어 귀가조치 됐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바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

A 훈병과 같이 훈련을 받았던 다른 훈병들의 진술에 의하면, A 훈병은 신병 교육대에 입소한 이래 소대장 B와 C, 중대장 D, 조교 E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동료 훈병들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과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아래와 같다.

소대장 B의 경우,

△ A 훈병뿐만 아니라 평소 훈련병들을 무시하고 구타를 했으며, A 훈병의 경우는 입소한 당일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했으며, 거의 매일 1~2대씩 구타를 했다. 기합을 주면서 허벅지나 정강이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급소 부위 등을 때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 20km 행군이 있던 날(A 훈병의 정강이가 부러진 날), A 훈병이 다리가 아프다면서 쓰러지자, 발로 차면서 연기하지 말라고 소리를 쳤으며, 억지로 걷게 하면서 나무로 툭툭 치고 발로 걷어찼다. 그러다가 정강이를 걷어차인 A 훈병이 쓰러졌다.

소대장 C의 경우,

△ 피티 체조를 하던 날, A 훈병을 부르더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멀리서 돌멩이를 던졌다. 또 지휘봉으로 머리와 엉덩이를 몇 차례 구타를 했다. 돌을 던지는 모습을 5차례 보았으며, A 훈병이 그 돌에 맞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 행군이 있던 날 행군 도중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A 훈병에게 참고 가라고 소리를 쳤으며, 결국 넘어지자 다른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발로 밟고 봉동이를 휘둘러 엉덩이를 때렸다. 그 뒤로 A 훈병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구타를 가했다.

현재 부대 측에서는 가족에게 A 훈병 사건에는 40여명의 가해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9일 문화방송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건이 보도되기 전까지, (가)사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사건에 대해 들은 바도, 조사한 바도 없다는 것이었다(천주교인권위원회 공문에 대한 회신).

그러나 그 이전에 신병교육대 측에서는 만일을 대비,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작업을 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F와 G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부대는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자로 입소 전 전과기록이 있는 F와 G 두 훈련병만을 지목,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두었다고 한다. 또 소대장 B는 F, G 뿐만 아니라 전 소대원들을 상대로 협박과 회유를 하며 입을 맞추었고, 애초부터 정신에 이상이 있었다는 식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들을 강요해서 받아 놓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A 훈병은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말의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현병대 조사가 진행중이며, 가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사건과 관련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가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부대의 무책임과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무시 때문이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부대 관계자는 한 번도 병원에 와 본 일이 없으며, 병원에서 중대장의 방문을 요청했으나 묵살을 당한 사실까지 있었다고 한다. A 훈병의 아버지는 부대를 방문했다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폭언과 수모만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으니” 사람을 얹잡아본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A 훈병은 왼쪽 발목 부상과 관련해서는 ‘혈관이 끊어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정밀검사마저 받지 못한 상태이며, 최근 들어 정신이상증세가 악화돼 가족의 면회마저 제한받고 있다.

A 훈병 사건은 군 부대의 전형적인 ‘보신주의’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안달하는 지휘관들에게 사병들의 인권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가족들에 대한 배려,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뒤따르지 않는다. 이를, 군 전체의 문제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1. 지난 8월 17일 육군은 "병사 계급은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면서 병사 상호 간에 명령·지시·간섭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육군 예하 전 부대에 내려보냈다고 한다.

주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 고참병이 후임병에 대한 '심부름시키기' '식기 세척 강요' '구타' '규정 외의 얼차려' 등의 행위가 전면 불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사 입건돼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외출·외박을 제한받게 된다.
- △ 병영 내에서 흔히 사용되던 '고문관 같은 놈' 등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와 '밥풀(위관 계급장)' 등 인격 모독성 발언과 비속어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모독죄'를 강력하게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갑론을박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안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실성 결여', '새로울 것 없는 조치', '군 기강 와해 우려'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존심이 강한 N세대 장병의 인격 존중과 건전한 언어문화가 정착돼야 잇따르는 병영 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나, 병사의 계급은 상하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고 복무기간과 직무를 표시하는 기준이며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병사 상호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하는 육군 측의 시각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입안자의 말대로 병영문화를 일대 개선시키는 '실험'이 '혁명'으로 전화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육군의 '사고 예방 종합대책'이 충분한 여론의 수

럼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한 자료를 접하지는 못했지만, 언론 등을 통해 표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사안으로 미루어 볼 때, '사고 예방 종합대책'에는 실상 사병, 그들만의 시각과 목소리가 빠져 있다. 영내 부조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인 불합리한 '군기 확립' - 예를 들면 '각 잡기', '내무군기' 등 -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돼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병들의 인권환경이 개선되려면, 사병출신 국방부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유일 것이다.

사실상 군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들이 사회 곳곳에서 개진되고 있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은 '군의문사는 없다'는 국방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국가기관의 재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 달라는 취지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권·시민단체들은 군사법제도 개혁, 군인 인권법 제정, 국방감독관 제도 도입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작년의 포천 농협 총기강도 사건, 최근 일어난 경남 하동 총기 유실사건, 일련의 인권침해사건 등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진취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보신주의·조직이기주의 논쟁의 높에 빠지곤 하는 것이 오늘날 군의 현주소일 것이다. 바야흐로 군은 군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 제반의 문제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노력하고 있으니 믿어달라'는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본다.

2 중·장기적 개혁과제

군대는 더 이상 국가 속의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규율과 군기의 유지, 지휘권의 확보를 최고의 덕목으로 보았던 시대와는 이제 결별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군 지휘부는 물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군대 내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자살

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그러한 죽음이 군대 내 가혹행위, 폭행, 구타로 인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욱 절망하게 된다. 우리의 군 조직이 여전히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다는 낡은 전통에서 매어있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 맞는 군은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적 군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대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군은 명령·복종을 그 기본적 속성으로 하므로 다수결 원칙, 아래로부터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조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군이 민주주의 사회의 제 원리를 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병사 한 사람, 초급장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군은 최고의 전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군 지휘부는 물론 우리사회가 합의할 시점이 되었다. 그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구체적인 제도개혁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기해 본 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가. 군인의 법적 지위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제까지 군인은 법적으로 볼 때 무에 가까운 존재였다.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장병들은 물론 직업군인들도 이러한 처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제는 법원에 의해 서도 부정되고 있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론’에 근거하여 상급자(지휘관 등)는 명령권과 징계권을 마음껏 행사해왔다. 그 결과 군인의 지위,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도 컸다.

이제는 이들 폐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전투력과 동원력을 갖춘 군대를 만들어 내야 한다. 현대전에 걸 맞는 용병술을 채택해야 한다. 지휘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을 아울러 중요시하고, 이 양 요소를 적절히 비교 형량(衡量)하고 고려할 때 군대도 살고 군인도 살 수 있다. 어떠한 명령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개별전사’들이 모여 동료애로 풍친 군대를 만들어 낼 때 군대는 그 전투력·동원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그러한 군인 그러한 군대를 만드는 데 법과 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방부 측에서 계획하고 있듯이 국군기본법도 만들어야 하지만 그와 함께 군인법(군인기본법, 군인권법)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

나.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때 권리는 실제로 보장될 수 있다. 본문에서 우리는 징계항고권이 군인사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권리란 주장하는 자가 늘어날수록 보장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군인법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져서 군인의 지위와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들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면 군인의 권리는 ‘종이 위의 권리’에 머무르고 만다. 따라서 군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정비는 그 권리실현을 위한 실효적 제도가 동시에 마련될 때 비로소 완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제도의 하나로 본문에서는 ‘군 옴부즈만제도’와 하급자들의 의사를 상급자의 결정과정에 전달하는 통로로 채택되고 있는 ‘중개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이를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 일반 장병들의 군 생활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위법행위, 일탈행위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들을 보다 공식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른바 병상호간 5대 금지사항은 국방부의 훈령 및 각 군 내부의 훈령 혹은 지침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들 훈령 혹은 지침은 대외비로 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거니와, 그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해 외부적 심사(국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등)를 하기도 곤란하다.

앞으로는 이른바 5대 금지사항의 내용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지행위의 규범력과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 다만 이른바 5대 금지사항 위반을 형벌로 처벌할 정도의 범법행위로 볼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5대 금지사항을 법률로 정하되, 그에 대한 처벌은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로 다스리는 것이 옳다. 즉 군대의 특성과 지휘권획립이라는 목적을 감안하여 5대

금지사항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되, 그 제재는 적정하고,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행 군형법을 한편으로는 일반형법으로 해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질서위반법(가칭)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군 사법제도 및 군 수사기구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지휘권과 인권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문에서는 군 사법제도를 민간법원형, 절충형, 특별군사법원형 등 대략 3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이들 모델들의 장단점을 우리 실정에 비추어 적절히 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고려하여 준전시(準戰時)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군 사법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모델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평시, 국내 군사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수사기구 및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체제로 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다. 냉전이후 군민전환(軍民轉換)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큰 방향은 민간수사기구 및 민간법원에 대해 평시, 국내 군사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으로 본다.

3. 당면한 실천과제들

이상 지적한 부분들이 중·장기적인 개혁과제들이라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개혁방안도 있다. ‘지휘권 강화’라는 논리에 휘둘려 2000년 6월에 사단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재차 설치하게 한 명령은 하루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평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는 고등군사법원의 경우처럼 법률로 명시되되, 전시에 한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보통군사법원의 설치보류 및 설치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군 검찰, 군 수사기구(현병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이를 기구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개혁방안들도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군 사법제도 및 군 수사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방법, 군인인권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무관들에게 각국의 군 사법제도 중 군 수사기구의 실태에 대해 보고하게 하는 국제청문회를 실시하여 그 청문회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도개선방안연구에 활용한다.

나. 국회 국방위원회 등이 주도하여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 무관들에게 각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군인인권보호제도(독일의 군 옴부즈만 등)를 구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국제청문회를 실시하여 그 청문회를 통해 얻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도개선방안연구에 활용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법제 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군인인권보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군인인권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완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라. 국방부는 이 장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다루는 논의들에 대해 예전에 보였던 소극적인 태도 혹은 비밀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 논의들은 결국 21세기 한국 군대의 새로운 모델형성이라는 보다 큰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끝)

<참조자료>

1. 천주교인권위원회 접수 의문사 현황 (2003년 4월 24일 현재)
 - 1) 접수 사건 유형별 통계(접수만 하고 진정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건 통계)

구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9건	7건	8건	10건	3건	107건
경	9건	1건	1건	2건	1건	14건

- 2) 진정 사건 유형별 통계

구분	자살	자살기도	사고사	질병/구타	변사/병사	계
군	72건	3건	6건	7건	1건	89건
경	8건	1건	1건	2건	1건	13건

※ 기타(통계에 넣지 않은 진정사건): 공익근무요원 투신자살 1건, 동원예비군 변사 1건.

- 3) 진정 사건 사고 발생 시기별 통계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계
군	1건	3건	11건	31건	43건	89건
경	0건	0건	0건	4건	9건	13건

- 4) 진정 사건 최근 5년간 통계(발생년도 기준)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대	2002년대	계
군	11건	10건	8건	13건	19건	61건
경	2건	2건	0건	2건	5건	11건

- 5) 진정 사건 자살처리 유형

- 총기자살 : 35건(44%)
- 의사 : 19건(24%)
- 추락사 : 14건(17%)
- 기타(수류탄자폭, 동맥절단, 의사, 질식사, 가스중독) : 12건(15%)

2. 군인의전화 운영 접수현황

구분	사망사고	구타사고	기타	계
군	8건	7건	6건	21건
경	1건	4건	0건	5건

<발제 2>

군대 내 폭력 및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

-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

- 안 정 애 (평화여성회 국방과제팀장 / 인하대 강사)

1. 들어가는 말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군대내 폭력 및 사망, 성폭력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군대 내 비민주적 폭력행위의 일상화는 일본군 출신 대통령과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역대 정권의 온존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군 창군 시 미 군정은 민족적인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인 면만 강조한 결과, 결국 일본군 출신의 군사기술자들이 한국군의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일본 군의 부정적인 운영방식인 구타, 기합 등이 그대로 한국군에 옮겨졌다.

군대 내의 폭력행위를 당연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군출신 대통령이 계 속 정권을 장악하여 권위주의적인 군사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졌던 우리의 현대 사와 맞물려 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조차 극도로 탄압받던 시대에 군대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군대 내의 구타, 가혹행위등 군인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성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고, 더 심각한 것은 이로 인해 자살, 의문사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사망조사를 위해 국방부 내에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고 언론에 공표한 바 있으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일본식의 병영문화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군 지휘관의 보신주의 - 승진·보직 시 악영향을 우려해 자체해결에 나서면서 은 폐·조작·축소·왜곡을 일삼는 상태 - 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고양에게 생선

을 맡기는' 식의 문제해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한시적이고 미봉책인 성격이 짙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군조직은 군인 개개인을 일반시민과 똑같이 인권과 존엄성을 갖춘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현재 한국군 구조상 웬만해서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군사법제도의 개선¹⁾ 요구는 국방부의 소극성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군사법제도 개선은 결과론적인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반면, 예방조치로서의 제도가 필요하다. 횡행하고 있는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인권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관이 필요하며, 현재 가혹행위·구타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해도 매년 천여명이 발생하고 있는데, 군폭력 예방활동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대 내의 인권과 안전, 복지를 지킴으로써 군인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 역할을 하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독일 국방감독관(군 옴브즈만 또는 군감찰관으로도 불림)제도를 살펴 보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진단하기로 한다.

2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

1) 군사법제도는 외견상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은 군사기밀 보호·지휘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외부의 감시·견제에서 철저히 유리·성역화되어 있다. 군사법 제21조는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리고 재판관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표면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판사 2인 외에 중·대령급의 심판관이 존재하고 있어 군 외압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사단장 이상이 형량을 확인, 감량재량이 있는 관할관 제도는 결국 군사법제도가 군지휘권 보장의 일개 수단에 불과한 실정이다.

1) 배경과 기본취지 및 목적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에서 국방감독관 제도의 도입은 1956년에 기본법 확정으로부터 시작되어 1959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전쟁을 야기한 국가로서 군대 창설이 조심스러웠던 독일(당시 서독)은 군이 창설되자마자 곧 국방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1955년 당시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독일군의 재무장이 불가피해지자 사회민주당(SPD)은 국방부 장관을 의회의 직접적 감독과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나치 독재를 경험한 독일인들이 군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재자와 군의 부당한 협력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독일인의 우려와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독일 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권위와 상충되어 채택되지 않았으나, 대신 연방의회는 군에 대한 특별한 감독기구를 두기로 합의하여 관련법인 국방감독관법이 1957년 6월 27일에 발효, 1959년에 본격적으로 국방감독관제도가 시행되었다.

여기서 보듯이 2차 세계대전의 추축국이었던 독일에서 시행된 국방감독관 제도는 일제 식민시대를 경험한 후 창설된 신생 한국군의 경우와 현격히 다를 수 밖에 없다.

국방감독관제도의 기본전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으로서 현 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은 제복을 입었을 뿐,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감독관제도의 기본목적은, 사병으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 계급인 군인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부-군-에 대한 의회 통제지원이다. 국방감독관의 기본 임무는 군인의 기본권 존중 및 군대의 도덕적(내면적) 지도력 원칙 존중에 대한 감시로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조기 경보 체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이것은 군이 '국가 속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1조에 국가로부터의 개인 인권보호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민주주의와 문민통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국방감독관제도는 스웨덴의 군사 옴브즈만제도를 모방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회가 임명한 보호자가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제도로 최초 도입하였는데, 기본목적은 국회가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처리하는 데 있다. 1809년에 옴브즈만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1915년에 군사 옴브즈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68년에 기존의 사법 옴브즈만 제도와 통합하여 3명의 옴브즈만이 군대 및 정부 행정 기관에 대한 민원조사를 분담하고 있다. 이들의 기능 및 권한으로는 경찰, 외무부, 보안당국의 모든 활동 포함, 중앙 및 지방정부, 국영기업체, 재판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설을 사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관련 문서의 자유열람,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관련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국회나 정부에 대해 입법 및 정책 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국방감독관제도의 기본 취지는 국방부 또는 군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 의회 국방위가 감독관을 임명하고, 지시하는 권한, 그리고 출석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방감독관은 의회 국방위에 보고할 의무를 갖는다.

국방감독관의 지위는 법률에 규정된 신분으로서 의회의 한 기관으로 규정되며, 공직이나 사기업체 취직은 금지된다.

출마 자격은 만 35세 이상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군 복무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도 않는다. 국방위원회나 기타 의원의 추천으로 토론없이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연방 의회 의장이 임명장 수여하고, 의회에서 선서한 후 바로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5년으로 중임이 가능하다.

2) 국방감독관의 권한

국방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권한을 갖는다.

첫째, 정보 요구권 및 문서 접근권(국방장관, 육군, 예하 부대 기관, 군 요원등에게), 청원자 진술 청취권, (사전예고 없는) 군부대(사령부, 기지, 군행정부서) 방문권, 현지 부대에서의 일반 군인 면담권, 징계권 행사에 관한 보고 요구권, 군법정에의 참관인 자격 참석권 등이다.

국방감독관은 군부대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다양한 인상과 자료를 종합하여 연방군의 내적 상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심층적 정보들은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통보되어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군 조직 자체로서는 파악되지 않는 군인들의 관심사나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군부대와 공유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경보체계로서 군 내의 문제점이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진단하고 평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 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 가협)'가 자체조사단을 운영, 사건 접수 시 군부대에 재조사를 신청하고, 군부대 방문을 요청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독일군의 해외파견시 이와같은 예방적 공조기능이 힘을 발휘하기도 하였는데, 캄보디아, 소말리아, 구유고슬라비아 파병 시 현장을 방문한 국방감독관과 군 지휘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 문제점들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다.

둘째, 제안 및 권고권으로 연례보고서, 특별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방부 장관 및 해당 기관에 문제 시정 요구 및 권고(재발방지 확약 요구 등)를 할 수 있다. 단, 구속력을 가진 명령이나 지시를 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인들이 직접 의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국방감독관이 연방의회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대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휘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국방감독관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위를 통한 도덕적 무게에 힘입어

군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3) 국방감독관 조직의 운영

국방감독관은 약 60 여 명의 의회 행정 요원(사무처)의 지원을 받으며, 복무규정상 의회 사무총장의 지시도 동시에 받는 이원화 체제이다. 조직은 사무처장(보좌역) 및 5개 분과(정책 및 내부행정/연방군 지도권 및 해외 주둔군/징병·예비군 관련 인사/하사관·단기 경력군 및 의용군 담당/복지·군인 가족문제)로 나뉘어져 있다.

4) 연례 보고서의 제출 및 처리

국방감독관의 의무사항으로 연례보고서의 제출이 있는데, 회계연도 중 1/4분기에 하원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의회의 군에 대한 통제권 행사 내용과 청원 내용 검토로, 군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이 주종을 이룬다. 상관 및 군 당국에서 군인 개개인에게 행한 기본권 침해를 주로 다루고, 군의 일반적인 체제와 군인 업무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국방감독관의 연례보고서는 정치적 혹은 의회적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군의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정책결정의 핵심자료가 된다. 더욱이 연례보고서는 대중매체에서 비중있게 보도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군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적인 속성상 비판적 견제기능을 갖는 연례보고서는 군에 대한 편향된 매도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군과 의회를 연결시켜 군과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연례보고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 발전에 대한 토론이나 결정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제출된 보고서는 의회 문서로 발간→관련 기관 및 유관 군기관에 배포→하원의장은 국방위원회에 보고서 전달→국방위는 국방장관에게 논평 요청→보고서 심의 및 국방장관의 논평 토론(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방위는 자신의 입장 표명 기회)→ 국방위에서 의회보고서 및 권고안 작성→ 의회 전체 공개 토론에 회부(요청시 국방감독관 출석) 순으로 처리된다. 특별한 것은 국방장관의 논평에서 제시된 시정안에 대해 다음 해 의회는 시정 처리 과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청원 접수 및 처리과정

청원 내용이 기본권 또는 내부 지도력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한다. 위배 판단 시 국방부 장관 예하의 부대(또는 기관)에 사안에 대한 논평 및 조사를 요청한다. 상·하급자 관계에서 야기된 문제일 경우 주로 대대급 선에서 처리하고, 좀 더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일 경우 사단급이 개입한다.

요청한 논평, 조사 기록을 군으로부터 접수할 때, 조사가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과실이 제대로 처벌받았는지 검토한다. 제대로 되었을 경우, 청원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군 기관(또는 부대)은 국방감독관의 검토 결과서 사본을 수령한다.

이 과정에서 대체로 관련 군 기관의 논평과 조사가 국방감독관의 요구에 부응하지만, 정치적 중요성을 띤 문제의 경우 고급 기관 또는 국방장관이 논평을 요청받기도 한다.

청원서 접수와 함께 군 불만규정(소원수리)과 징계규정 하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독관은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청원 건 수는 제도 시행 당해 연도인 1959년에 3,368건, 1970년에 7,142건, 1980년에 7,244건, 1989년에 10,19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그 후 점차 감소하여 최근 2000년에는 4,952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군의 경우 군폭력 구제수단으로서 소원수리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강변하고 있으나, 경험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실상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소원에다 본인의 여러 가지 군생활에 대해 솔직히 써내면 필체까지 파악하는 철저함을 보이면서, 청원자에게 오히려 더 엄한 기합

을 주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왕따를 시킴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원수리 제도가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군대 내 문제를 심각하게 들어 줄 외부인 또는 기관이 필요하고, 이 때 청원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6) 군인의 기본권과 군대의 도덕적(내면적) 지도력 원칙

감독관의 주요 임무인 군인의 기본권 보호에서 말하는 군인의 기본권이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등하게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 보장이 전제된 것이다. 기본권의 핵심내용은, 자기 존중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권(외부로부터 모욕적인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정당활동 보장),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법원에 제소할 권리 등을 말한다.

군대의 도덕적(내면적) 지도력 원칙이란 군인 개개인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취급된다. 즉 군대가 ‘국가 내 국가’가 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제로 설명될 수 있다. 도덕적 지도력 개념은 군대 내 인권교육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즉 이 개념은 독일의 재군비화 과정을 전후하여 등장한 뒤 독일 연방군의 지도이념으로 정착 하였으며, 군인법 등 입법적 조치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독일연방군의 지도원리로서 도덕적 지도력 원칙이란 “군이라는 권력주체 내에서 과거의 군국주의적·파시즘적·반민주적인 경향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적·법치국가적 군제를 구상하고 관철시켜려 했던 1950년 대 초반 이래의 여러 노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독일의 재군비화가 가능하였다.

이 개념을 통해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사이의 조화·조정이 가능하며, 군 조직에서도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라는 헌법원리는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

하게 제시되었으며, 앞서 지적한 바대로 규범적으로도 관철되었다. 이 원칙을 우리 군대에 적용한다면, 군대 내 인권교육은 개인의 인권의식 향상 뿐만 아니라 제도로서의 군대 그 자체의 인권감수성, 법치주의적 구속성을 강화시키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개념이 기대한 군인상은 어떠한 명령에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개별전사’이며, 인권교육을 통해 그러한 군인을 양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7) 청원 자격 및 청원자 보호

군 구성원 전체(사병으로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전 계급)가 청원자격을 갖는다. 반드시 실명이 제시되어야 하며, 익명 시 접수가 안 된다. 그리고 청원 단위는 개인이어야 하는데, 청원서 조사 전 본인 동의 전제 하에 본인 외에 동료, 부인, 대변인, 가족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단순한 불평·불만이 아닌 잘못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군 구성원은 누구라도 군대 내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방감독관에게 직접 청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청원 의뢰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청원 내용이 조사 결과 타인에 대한 중상·비방·오판일 경우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게하는 책임제를 실시한다. 청원자는 2개월 내로 결과를 통보 받는다.

3. 맷는 말

인권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군대를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군인의 인권보호는 군조직의 생리와 논리가 절대 우선시될 수 없는 국가 본연의 임무이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부정적인 문제를 끊임 없이 야기시키는 군조직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둘 수는 없다. 특히 그것이 군 개개인의 기본인권과 존엄성 보호 문제는, 군 자체의 역사적인 성격과 군 지

휘관의 보신주의로 인해 불가능한 영역이 될 수 밖에 없다.

군이 가지는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군인 개개인의 인권이 무시되어도 좋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물론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제한과 유보가 인정되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군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군의 방위력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 방위력은 군인 개개인의 사기에 달려 있다.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안정감을 갖춘 건전한 군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제대로 갖춘 군은 확보될 수 없다. 군대 내에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병구타행위와 자살사고 등은 군입대 예정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한다.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는 군이 현정질서와 민주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부대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인상과 자료를 종합하여 군의 내적상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대 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결과론적인 문제 해결책인 군사법제도의 개선과는 달리 군대 내 사고를 예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으로서의 의의가 크다.

그리고 이 제도는 특히 군대의 기본 속성인 비밀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는 비록 역사적인 차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우리의 현실과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기본적인 전제와 시행방법 등에서 적실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Dr. Karl Gleumes, "The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Armed Forces," 1999
- German Bundestag, "Parliamentary Commissioner for the Armed Forces," 2003. 1. 8(<http://www.bundestag.de/cgi-bin/druck.pl>)
- 클레어 마린펠트, "기본 인권과 도덕적 지도력,"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 성명,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 [한겨례 21], 2002. 10. 17
- 이혜숙, "군대폭력과 군의문사,"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워크샵], 2001. 3. 17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 [2000년도 국정감사자료집(V)-국방위원회 소관], 2000. 9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 국가인권위원회, [군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파악], 2002

<토론>

국회에 「국방옴부즈맨」 을 설치하자

- 권 세 기 (입법정보연구관, 정치학박사)

1. 군인의 기본권 보호

예나 지금이나 안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는 남북한의 대립과 위협적인 강국들을 이웃으로 두고 있어 안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남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방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국민들이 지고 있는 부담은 적지 않다. 그리고 국방이라는 영역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성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비록 일부라고 하더라도 군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두려움은 병역기피, 병역비리 따위로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누구나 병역의무를 신성하게 여겨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병역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며, 또 실제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군복무를 면제받으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로 많은 어머니들은 자식의 입대와 군복무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군(軍)당국을 믿을 수 없다거나 군부대내 생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실제로 한 해 약 4백여 명의 군인들이 사망한다고 하며, 그 가운데서 죽음의 원인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군대 의문사'는 1백20여건이나 된다(「시사저널」 1999.5.27.). 이러한 의문사와 군부대의 불투명성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형성을 방해하며 군의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군도 사회의 한 부분이며, 군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이자 인간이기 때문에 군의 민주화와 군인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우리 국회는 군을 통제하고 군인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수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대통령 중심의 정치체제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실천하는 것 일 뿐만 아니라, 균형과 견제의 제도적 실현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기여한다. 나아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나는 독일연방의회의 국방옴부즈맨(Wehrbeauftragte; Defense Commissioner) 제도에 주목한다.

2. 독일연방의회의 「국방옴부즈맨」

1959년 4월 독일연방의회에서는 초대 국방옴부즈맨이 그 직무를 시작함으로써 독일 현정사에서 새로운 의회기구가 출범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스웨덴의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독일의회가 본받은 것으로 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실천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군에 대한 의회의 직접적 및 지속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독일연방의회의 논의는 195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독일군의 재무장이 불가피해지자 사회민주당(SPD)은 국방부장관을 의회의 직접적 감독과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나치독재를 경험한 독일인들이 가졌던 군에 대한 부정적 기억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독재자와 군의 부당한 협력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독일인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기본법에 규정된 행정부의 권위와 상충되는 데다가 아데나우어 수상의 설득에 밀려 철회되었다. 그 대신 연방의회는 군에 대한 특별한 감독기구를 두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는 헌법 제45b조(1956년 3월 16일 제정)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보완하는 의회의 보조기구”로써 연방의회에 국방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헌법에서 위임한 「국방옴부즈맨법」은 1957년 6월 27일 발효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국방옴부즈맨은 군을 행정부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의회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관으로 하여금 통솔케 하고(독일헌법 제65a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평시 군에 대한 명령 및 지휘권을 국방부장관이 갖고있다), 연방 의회에는 국방위원회를 두고 조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도 40여 년의 활동과 그 특별한 역할을 의회와 군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다

1) 임무와 기능

독일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맨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군의 “내부지휘원칙”이 준수되도록 감독하여 군을 헌정질서와 민주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비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간 존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모든 무장권력이 내재하고 있듯이 군이 “국가 속의 국가”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두 가지 과제가 그것이다. 국방옴부즈맨은 이러한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권한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국방옴부즈맨이 군인들의 청원을 직접 받는다는 점이다.

2) 특별한 청원기관

모든 군인은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직접 국방옴부즈맨에게 호소할 수 있다. 모든 군인은 군내 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국방옴부즈맨에게 고충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 군인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다른 기구나 절차와는 달리 호소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에 거의 제한이 없고, 기간과 방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군인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료, 대리인, 또는 가족이 대신 국방옴부즈맨을 찾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군인들의 배우자가 국방옴부즈맨에게 직접 진술한다. 통계에 의하면 1959년 3천368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으며, 1989년에는 1만190건을 기록하였다. 1998년에는 6천122건의 청원이 접수되었다.

군인들은 국방옴부즈맨에게 청원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복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그 진술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남을 중상모략하는

경우는 청원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부대방문과 군인면담

국방옴부즈맨은 현법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방국방부와 그 산하 기관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물론 극비문서는 제외된다). 또 국방옴부즈맨은 관련자들을 직접 청문할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증인들은 군부대의 상관 앞에서 보다 국방옴부즈맨 앞에서 더 솔직하고 자세하게 진술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옴부즈맨의 면담과 그 결과는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방옴부즈맨만이 가진 권한 중에 제일 눈에 띠는 것은, 국방옴부즈맨은 언제든지 사전 예고 없이 어떤 부대라도 방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직접 면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대 현장방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다양한 인상과 자료를 종합하여 연방군의 내적 상태에 대한 가장 현실적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수집된 심층적 정보들은 국방부장관에 즉각 통지되어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국방옴부즈맨은 군내에서 파악되지 않는 군인들의 관심사나 어려움에 대하여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군부대와 공유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마치 조기경보체계와 같은 기능으로 어떤 문제점이 사고로 터지지 않도록 미리 미리 진단하고 평가하여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바로 이 점이 국방옴부즈맨이 가진 기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긍정적 요소인데, 군과 국방옴부즈맨 사이는 조사 받고 조사하는 어떤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는 어떤 문제점을 미리 덮고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과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방적 공조기능은 군의 해외파견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소말리아, 구유고슬라비아 파병시 현장을 방문한 국방옴부즈맨과 군지도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4) 연례보고서

국방옴부즈맨은 어디까지나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의 지시를 받는 의회소속기관이다.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는 언제라도 국방옴부즈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방옴부즈맨은 연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국방옴부즈맨은 국방부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할 수 없으며, 국방부장관도 국방옴부즈맨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방옴부즈맨은 관련 부서에 특정한 사안의 검토나 문제점의 개선을 권하거나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구속력을 가진 명령이나 지시를 발할 권한은 주어져있지 않다. 그렇지만 모든 군인들이 직접 의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서 국방옴부즈맨이 연방의회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대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휘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요컨대 국방옴부즈맨은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권위를 통한 도덕적 무게에 힘입어 군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한다.

물론 국방옴부즈맨의 연례보고서는 정치적 및 의회적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군의 내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정책결정의 핵심자료가 된다. 게다가 연례보고서는 대중매체에서 비중있게 보도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군에 대한 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판적 견제기능을 갖는 연례보고서는 군에 대한 편향된 매도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군인과 의회를 연결시킨다는 일종의 중개자 역할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요컨대 국방옴부즈맨은 군인과 군을 긍정적으로 조화시키고, 군인과 의회를 연결시켜 군과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5) 선출

국방옴부즈맨은 연방의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임되며(연방의회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 만35세 이상의 독일인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다. 5년의 임기를 가진 국방옴부즈맨은 재직기간 중 다른 공직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정치적 대표가 될 수도 없다. 연방의회의 의원의 임기보다 1년이 더 긴 국방옴부즈맨의 임기는 의회의 세력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95년 3월 30일 연방의회에서 제8대 국방옴부즈맨으로 선출된 마리엔펠트(Claire Marienfeld-Czesla 1940년생, 기민당, 연방의회 의원 1990-1995) 여사는 최초의 여성으로 이 직을 수행하고 있다.

3. 마무리

군복무에 소집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 직업설계에 커다란 도전이다. 게다가 군대 내에서 개인의 인권이 만족스럽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국방의무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시 군이 양질의 군인을 충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에 적극적으로 입대한 건강한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오히려 군으로부터 인권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면 커다란 모순이다. 국방이기 때문에 성역이며, 성역이기 때문에 비밀에 쌓여있어야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과 관행은 이제 개선되어야 한다. 국방이라는 성역의 벽에 부딪쳐 자식의 석연치 않은 죽음에 고통받는 부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무력집단으로서 군이 가지는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군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독일헌법 제17a조에도 그러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과 유보가 인정되기 때문에 군은 더욱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군의 방위력에 직결되어 있으며, 그 방위력은 결국 군인정신에 투철한 개별 군인들에게 달려있다.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안정을 갖춘 건전한 군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갖춘 군은 확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국회가 독일연방의회의 「국방옴부즈맨」을 본보기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군인들의 인권이 좀 더 많이 보호되고, 군이 시민사회와 일원으로 통합되기를 기원한다. ♠

<참조자료>

독일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

Deutscher Bundestag-Wehrbeauftragte

권 세 기(입법조사연구관, 정치학박사)

차례

1. 군과 국가
2. 역사적 발전과정
3. 법적 지위
4. 신분
5. 법적 임무
6. 직권
7. 국방옴부즈만: 군인들의 청원기관
8. 연례보고서
9. 국방옴부즈만과 여타 청원기구
10. 조직

독일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

1959년 4월 독일 연방의회의 초대 국방옴부즈만(Wehrbeauftragte; Defense Commissioner)이 그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독일 헌정사상 완전히 새로운 의회 기구가 출범하였다. 국방옴부즈만 제도는 독일연방의회가 실천하고 있는 군에 대한 의회적 통제의 독특한 형태이며, 스웨덴의 군옴부즈만 (Militie-Ombudsman) 제도를 본보기로 삼은 것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은 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군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삼는다. 국방옴부즈만은 지난 40년 동안 주목할만한 역할을 하였다. 물론 초기에는 비판과 오해 등 어려움도 없지 않았다. 초기에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전통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이제 국방옴부즈만은 군에서나 의회에서나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동유럽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 사회도 군을 민주주의 공동체에 통합시키고, 투명한 국방행정을 확보하며,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의 지속적 및 효율적 통제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군과 군인의 사회적 통합과 법적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독일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소개한다.

1. 군과 국가

군은 모든 국가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군은 주어진 임무, 구조, 그리고 무력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국가는 군이 헌정질서에 상응하는 역할과 기능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는 무력수단의 사용에서도 그렇고 무력을 사용하는 군인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의 헌법적 지위는 국가마다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민주적 국가는 군을 사회와 연결시키고 군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그 때문에 군에

대한 의회의 통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그 통제의 수단과 방법도 다양하다. 예컨대 의회는 군 예산을 결정하고,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군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통제기능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데, 독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 역사적 발전과정

독일 군법의 역사는 1945년까지 국가원수가 곧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1949년 독일인들은 서유럽과 북미를 모델로 한 민주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그 당시 독일은 군대를 갖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동·서의 대립이 심화되자 미국과 영국이 자유진영을 방어하기 위하여 독일의 무장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여전히 나치시대의 군의 부당한 협력에 대한 부정적 기억이 팽배해 있었으며, 단지 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려와 불신을 가지기에 충분하였다. 그렇지만 독일의 재무장은 외교정책적 이유에서 불가피하였다²⁾. 그래서 군에 대한 특별한 통제가 필요하다는데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즉, 독일인들은 장차 군을 남용하는 어떤 기도도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하며, 군에 대한 정치의 우위는 무제한 보장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합의는 군을 행정부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키고³⁾, 의회에 책임을 지는 장관을 두며, 의회에는 국방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위원회에 조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헌법 제45a조). 당시 야당은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연방수상에게 적용되는 불신임투표를 국방장관에게도 적용하자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2 1955년 서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서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주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재무장이 시작되었다.

3 독일에서는 군에 대한 명령 및 지휘권이 국방장관에게 주어져 있다(헌법 제65a조).

그렇지만 의회의 추가통제수단으로 연방의회의 국방옴부즈만을 보조기관으로 도입하였다.

1956년 3월 16일 연방헌법 제45b조에 새로이 규정된 국방옴부즈만의 임무와 지위는 이렇게 규정되었다.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회의 견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을 설치한다. 자세한 것은 연방법에서 정한다.”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1957년 6월 27일 “독일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법”이 효력을 발생하였고, 1959년 초대 국방옴부즈만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3. 법적 지위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에 설치된 기관으로 입법부에 속한다.

국방옴부즈만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는 국방옴부즈만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만약 국방위원회가 사안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따라서 국방옴부즈만은 그 활동을 중지할 수 있다.
-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연방의회와 국방위원회는 언제든지 국방옴부즈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국방옴부즈만이 견제하는 연방국방장관은 행정부의 한 부처이다.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장관은 국방옴부즈만에게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방옴부즈만도 국방장관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4. 신분

-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의 의원도 아니며 공무원도 아니다. 국방옴부즈만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르는 공법적 직책이다. 그의 법적 지위는 차관에 준 한다.
- 국방옴부즈만은 재직기간 중에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으며, 영업이나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정치적 대표가 될 수 없다.
- 국방옴부즈만은 만 35세 이상의 독일인이면 누구나 피선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으로 복무하여 얻은 군대관련 지식이 이 직책에 선출되기 위한 공식 전제 조건이 아니다.
-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에서 토의 없이 비밀선거로 선출되며, 국방상임위원회와 원내교섭단체들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연방의회의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선출된다.
-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 의장에 의해 임명되며, 취임선서는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직책의 효력은 임명장이 전달되고 선서가 이루어지면서 시작된다.
- 국방옴부즈만의 임기는 5년으로 의회의 회기보다 1년이 더 길다. 이는 의회 다수파의 교체와 무관하게 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재선이나 다선이 허용된다.
- 국방옴부즈만의 임기는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 의회의 소환이나 자진 사퇴 시에 종료된다.

5. 법적 임무

법규정에 따르면 국방옴부즈만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돋는 보조기관”으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옴부즈만의 구체적 임무는 국방옴부즈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군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군 내부 지휘원칙을 어긴 사례가 알려지는 경우 활동을 한다.(여기서 군인은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과 “내부 지휘 원칙”은 국방옴부즈만의 담당분야를 개괄하는 개념으로, 의회가 위탁한 통제임무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한다.

그렇지만 국방옴부즈만의 임무는 의회가 위탁하여 군을 견제하는 데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방옴부즈만법은 특별한 청원기관의 기능도 부여받고 있다. 모든 군인은 개인적으로 직무상의 계통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방옴부즈만에게 호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 군인의 기본권

군인의 기본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의미한다. 군인은 명령과 복종이라는 원칙이 지배하는 계서 조직 속에 있는데, 이는 개별 군인의 자유와 기본권이라는 한 측면과 군 복무라는 다른 측면 사이의 강한 긴장관계 속에 있다고 특징 지을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칙은 의무복무를 하건 직업적으로 복무하건 간에 군인에게 시민과 똑같은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인은 시민이며, 군복을 입은 국민이다.

그러나 군인의 기본권은 군복무가 요구하는 한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조치에는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그래서 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유효하다:

- 인간존엄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불가침적 원칙: 예컨대 군인은 강도 높은 훈련과정에서도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수 없다.
-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표현의 자유는 군의 기능상 제한될 수 있다. 군의 기능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권이 주어져 있다. 따라서 군인이 복무 범위 외에서 정당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 국가에 의한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2) 군 ‘내부 지휘 원칙’

군 내부 지휘 원칙은 연방군을 설치하면서 도입된 혁신적 개념으로 과거의 불미스러운 경험으로부터 단절을 의도한 것이다. 이 개념은 따로 개념규정을 하지 않은 채 국방옴부즈만법에 수용되었다. 그 본질과 효과에 대하여 활발한 토론을 거쳐 도입된 군 내부 지휘 원칙은 두 가지로 구체화되었는데, 그 하나는 연방군의 내부질서에 대한 기본개념이며, 다른 하나는 군을 국가와 사회에 밀착시킨다는 원칙이다.

군 내부에서 시대에 적절한 지휘 및 통솔 원칙이 실천되어야 하는데, 내부 지휘는 시민으로서 군인의 개인적 자유권과 군인의 의무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마찰을 해소하고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군 지휘관의 지휘 지침과 자세는 현법질서의 바탕인 인간존엄을 그 핵심으로 삼아야 하며, 동시에 정치적 및 사회적 발전과 군 기술 분야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내부 지휘 원칙은 “지휘와 교육에서, 징계권의 행사에서, 군부대의 정치교육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에서, 복무 외 공동체 생활에서”(그라프 폰 바우디신) 실천되어야 마땅하다.

군은 사회의 한 기구로서, 또 군인은 한 개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질서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 군과 군인은 전체 사회의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모든 무장권력 속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요소, 즉 군이 독립적인 ‘국가 속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없앤다.

군 내부 지휘 원칙 개념에 대한 연방군 내의 논쟁은 1993년 2월 「중앙복무규

정 10/1」이 반포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그 훈령 속에 내부 지휘의 개념이 정의되어 있다. 내부 지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군복무를 위한 정치적 및 법적 근거와 군 임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다.
- 군과 군인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며, 연방군의 임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 성실한 임무수행을 위한 군인의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군부대의 기울과 단결을 유지한다.
- 군의 내적 질서를 인간적이고, 합법적이며, 임무수행에 효율적으로 형성한다.

군의 일상에서 내부 지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일련의 법규와 훈령, 그리고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기본이 되는 규정인 군인법에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 상급자 및 하급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법규는 자세한 지침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군의 일상생활에서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상급자는 법규의 문구에 의존할 것 아니라 ‘가슴과 이성’으로 하급자를 해야 한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국민으로 자유인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행동하고 임무수행에 능동적이어야 한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이해에서 우러난 복종이다.

(3) 국방옴부즈만의 활동

국방옴부즈만은 두 가지 동기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일단 국방옴부즈만은 연방의회나 국방상임위원회에서 지시를 하는 경우 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드물었다. 국방옴부즈만은 특정한 사안의 검토를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지침을 요청할 수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군인의 기본권이나 내부 지휘지침이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되

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자체 결정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국방옴부즈만의 활동을 유발하는 상황은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였을 때, 연방의회 의원의 통지, 그리고 방송, 언론, 텔레비전을 통한 보고나 연방국방장관에게 보고된 “특별사건”의 평가 등이다. 국방옴부즈만의 활동은 국방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을 직접 조사하는 경우 중지된다.

국방옴부즈만은 자체 결정으로 활동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중을 둔다.

국방옴부즈만의 통제권은 국방과 관련된 행정부의 모든 기구에 미치며, 일차적으로 연방국방부와 그 업무범위가 그 대상이 된다.

6. 직권

국방옴부즈만은 헌법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요구권과 권고권을 갖는다.

(1) 자료요구권

국방옴부즈만은 연방국방부와 산하 기관을 상대로 자료와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방옴부즈만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대로 하여금 특정한 사안을 검토하고, 검토된 결과에 대한 의견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추후 연방국방부 관련자와 면담시 근거가 된다.

의회가 요청하거나 어떤 대상을 가진 청원의 경우 국방옴부즈만은 청원자나 증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직접 청문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증인들은 군대의 상관 앞에서보다는 국방옴부즈만 앞에서 더 솔직하고 포괄적으로 진술한다. 그 때문에 중요한 사건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훨씬 용이해졌다.

국방옴부즈만은 언제든지 사전 예고 없이 연방군의 모든 부대, 시설, 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러한 부대 방문권한은 국방옴부즈만에게만 주어진다.

부대방문은 국방옴부즈만이 직접 모든 계급의 군인들과 면담하고 받은 여러 가지 직접적 인상을 종합하여 연방군의 내적 상태에 대한 가장 현실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장방문을 통하여 국방옴부즈만은 청원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부대 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군인들의 관심사 및 걱정거리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얻는다. 이를 통해 확인된 중요한 사안은 국방장관에게 즉각 통지하여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정보자료를 획득하는데 군의 징계권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하며, 형사 또는 징계재판절차에서 법원심리에 참관자로서 참석할 수 있는 국방옴부즈만의 권한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권고권

국방옴부즈만은 담당 부서에 사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특정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담당 부서의 실수와 결함이 확인되면 국방옴부즈만은 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이를 시정토록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국방옴부즈만은 형벌 및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건을 다루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국방옴부즈만의 권고권은 군의 내부 지휘 원칙을 실천하는데 기여한다. 국방옴부즈만의 권고는 구속력 있는 지시나 명령이 아니다.

국방옴부즈만의 권한을 자료요구나 권고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방옴부즈만의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모든 군인들이(일등병에서 장군에 이르기까지) 직접 의지할 수 있는

독립된 의회기구의 존재는 처음부터 많은 상급자의 지휘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방옴부즈만은 국방부를 포함하여 상급부서를 개입하도록 만들며, 연례보고서 및 특별보고서에서 확인된 결함을 의회에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국방옴부즈만의 영향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가 회피하기 어려운 도덕적 무게에서 비롯된다.

7. 국방옴부즈만 : 군인들의 청원기관

모든 군인은 누구나 직접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고 국방옴부즈만에게 호소할 권리를 가진다. 군인은 기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실을 국방옴부즈만에게 진술할 수 있다. 군고충처리규정에 따른 청원과는 달리 반드시 불만을 토로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청원서는 군복무, 개인신상, 그리고 사회적 문제 등 군 내의 일상생활의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 예컨대 군인의 권리와 의무, 지휘스타일과 지휘태도, 군사교육, 징계법의 적용 등 지휘 분야와 자신의 경력문제, 전출과 지휘, 평가 등 직업군인의 인사관리 분야, 소집, 배치, 전역 등 국방의무자의 개인문제, 치료, 숙소, 군복, 봉급, 근무시간 등의 문제가 포괄된다. 군인이 자신의 관심사를 직접 국방옴부즈만에게 진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군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동료, 대리인 또는 가족이 대신 국방옴부즈만에게 호소할 수 있다. 많은 군인의 배우자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애로사항을 국방옴부즈만에게 진술한다. 국방옴부즈만은 이의가 제기된 사안을 검토하기 전에 관련 군인의 동의를 구한다.

국방옴부즈만의 임무와 권한에 관하여 모든 군인들은 기본군사교육 초기와 부대로 배치된 다음에 다시 한 번 교육을 받는다. 군인들은 국방옴부즈만에 청원하였다라는 이유 때문에 복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되어서는 아니 된다. 군인들은 청원권의 보호를 받는다. 물론 이러한 청원권은 의도적으로 진실에 반

하거나 모욕적이거나 중상 모략하는 성격의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청원자는 전적으로 징계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청원권을 요구하는데 허용된 의견개진의 범위와 정도는 포괄적이다. 청원자는 청원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며, 그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감정적으로 작성된 청원서와 마찬가지로 과장되고 성급하게 내려진 결론으로부터도 청원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연방군에 근무하는 민간인은 국방옴부즈만에 청원할 수 없다. 그러나 물론 그들을 통해 알려진 사안이 국방옴부즈만의 활동을 유발할 수는 있다. 이는 연방군 외부의 인사로부터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청원은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국방옴부즈만은 먼저 청원내용이 군인의 기본권이나 군 내부 지휘원칙을 침해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침해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국방옴부즈만은 청원자의 진술에 따라 편파적이지 않으며 즉각적으로 사안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국방부의 관련 부서에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부대의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와 관련된 청원의 경우 이는 대부분 보병대대 수준이 된다. 법적으로 비중이 크고 어려운 경우에는 애초부터 사단 수준으로 접근한다.

요구된 입장표명과 조사서류가 제출되면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증거가 바르게 인정되었는지, 발언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실책이 적절하게 처벌되었는지 등이 검토된다. 청원자에게도 검토결과가 통보되며, 부대는 최종결론서의 사본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와 입장표명은 국방옴부즈만의 관점에서 제기된 요구에 상응한다. 그렇지만 상급 부서에 재차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연방국방장관에게도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 원칙

관련 사안 또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 문제의 경우에 국방장관은 국방옴부즈만의 면담상대자이다.

청원진술 외에 군내 소송, 징계, 형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 권력분립 원칙을 존중하여 국방옴부즈만은 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명백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국방옴부즈만은 조사활동을 중단한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건이 주어진 사안을 넘어서는 진술과 결론을 유발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다.

국방옴부즈만의 두 가지 기능, 즉 군에 대한 견제기관과 군인을 위한 청원기관으로서의 기능 사이에 마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견제기관으로서 국방옴부즈만은 권리와 법을 준수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동시에 군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개별 청원자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8. 연례보고서

국방옴부즈만은 매년 정기보고서를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헌법이 규정한 임무, 즉 견제기관과 청원기관이라는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고서는 주로 군의 부정적 현상을 다룬 내용이 된다. 지금까지 국방옴부즈만은 보고서를 일차적으로 군의 “결함에 관한 보고서”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결코 군의 전체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의회의 견제는 행정부가 권리와 법을 준수하는지를 감시하는 일 외에 의회로 하여금 직접 결함과 실책을 확인하고 파악도록 하여 정치적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방옴부즈만의 연례보고서에는 기본권과 내부 지휘원칙에 대한 상급자와 부서의 침해나 위반사례 외에 군과 군인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 환경에 대한 포괄적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연례보고서는 특히 군 내부 지휘원칙과 관련되는 기존의 법과 규정의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에 군의 상태에

관한 조기경보체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국방옴부즈만의 성격상 연례보고서는 정치적 및 의회적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연방의회, 특히 국방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군의 내적 발전을 위한 논의와 정책 결정의 핵심근거로 삼는다. 연례보고서는 개별 군인과 군 전체의 관심사와 걱정거리에 대하여 의회가 주목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국방옴부즈만은 비판적 견제기능을 갖는 연례보고서를 통하여 군인과 연방의회를 연결시키는 일종의 중개자 역할을 한다.

국방옴부즈만의 연례보고서는 일찍부터 대중매체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연례보고서에 대한 보도는 일반대중에게 군의 관심사와 문제점들을 알리고 요구되는 지원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 물론 군에 대한 부정적 사건과 사태 발전에 관한 보도는 군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매도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험부담 때문에 국방옴부즈만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관점에서 언론의 보도는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일부 부정확한 보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 제출되는 연례보고서는 회계연도 1/4분기에 연방의회 의장에게 보고되며, 의회 간행물로 발간된다. 그리고 나서 이 보고서는 부대에도 배포된다. 의회는 이 보고서를 국방위원회로 송부하며, 국방위원회는 국방장관에게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한다. 국방장관의 의견이 제출되면 국방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검토한다. 이 때 국방장관과 국방옴부즈만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의 심의는 본회의에서 공개 검토를 의결하는 것으로 끝난다. 대개 의회의 요구에 따라 국방옴부즈만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진다.

연례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방장관은 보고서에 확인된 결함을 제거하는 조치에 관하여 보고하며, 이러한 조치의 실천현황에 대하여 1년 뒤에

다시 의회에 보고한다.

9. 국방옴부즈만과 여타 청원기구

국방옴부즈만에게 청원하는 하는 것 외에 군인들은 군청원규정에 따라 고충을 신고하든가, 의회 청원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방옴부즈만에게는 정해진 기간이 없이 청원을 할 수 있다. 만약 군인이 공식적으로 청원권을 활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특정 군인이 청원위원회와 국방옴부즈만 두 곳에 청원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업무의 중복과 잘못된 결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호 자료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청원위원회와 국방옴부즈만이 동시에 동일한 사안을 검토하게 되면 국방옴부즈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군인들의 권리 개선을 위하여 군인참여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계급별로 선출된 대표를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대표를 통하여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협력과 동료간의 신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도록 한다.

10.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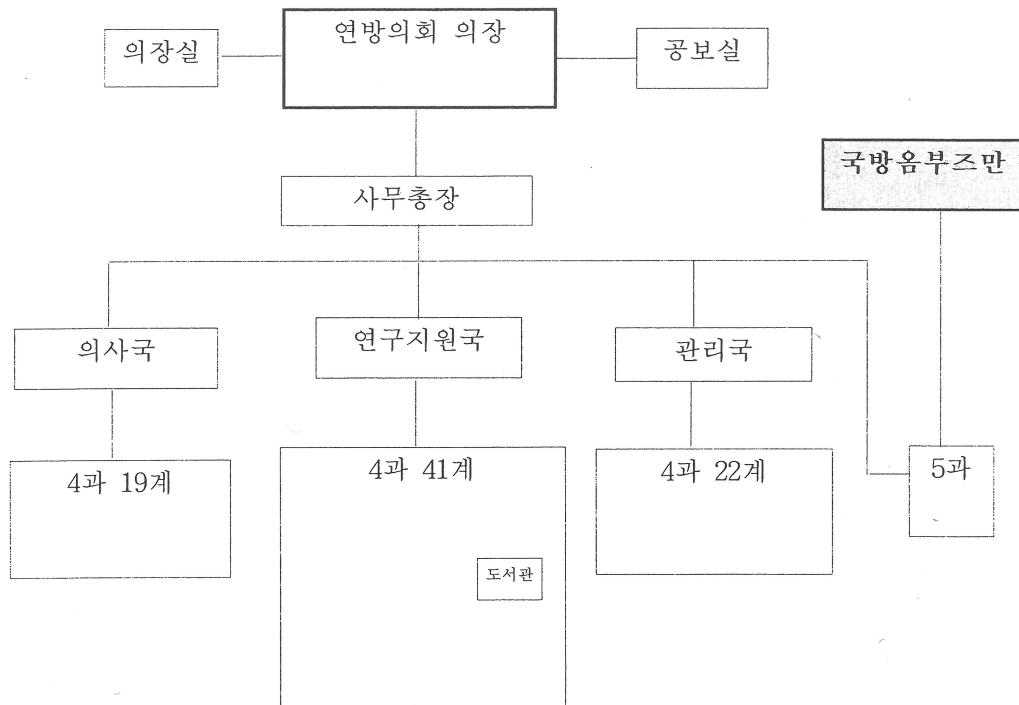
국방옴부즈만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현재 70여명의 인력을 갖춘 기구로 성장하였다. 직원들은 연방의회 소속으로 담당 전문분야에서는 국방옴부즈만의 지휘를 받지만 행정적으로는 연방의회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방옴부즈만을 지원하는 조직은 그 업무분야가 5개로 나누어져 있다(그림 1 및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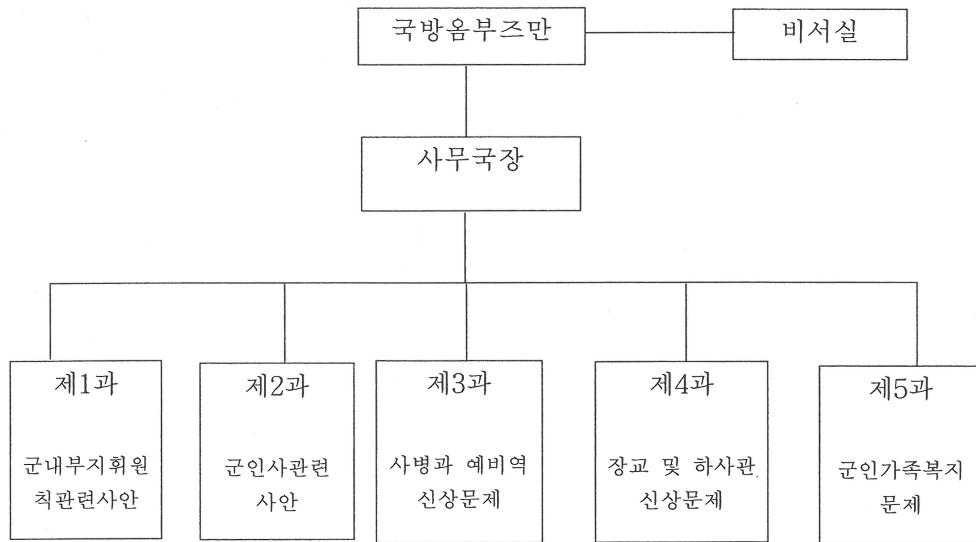
초대 국방옴부즈만은 1959년 2월 헬무트 폰 그롤만(Helmut von Grolman

1898-1977)이 선출되어, 1959년 4월 3일 직무를 시작하였다. 임기 5년의 국방옴부즈만은 그 동안 모두 8명이 선임되었다. 1995년 3월 의회에서 제8대 국방옴부즈만으로 선출된 마리엔펠트(Claire Marienfeld-Czesla 1940년생) 여사는 국방옴부즈만에 선출된 최초의 여성으로 1990-1995년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을 지냈다.

【도표1】 독일 연방의회 조직



【도표2】 국방옴부즈만 조직



<토론>

군인의 인권과 성폭력 문제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먼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안하시는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는 그동안 수없이 문제제기 된 군대내 인권침해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서 두 분 발제자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발제내용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어떤 철학을 갖고 이러한 제도를 주장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변호사님께서 군지도부와 우리사회가 합의할 문제라고 지적하신 “병사 한 사람, 초급장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 인권을 지켜줄 수 있을 때 군은 최고의 전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서로 다른 가치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의의와 논리적 근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반론 등을 좀 더 정교화하는 고민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의식을 갖고 여기에 참여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한가지 예로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한 여성의원이 참여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 폐지번복, 군인가족 복지대책, 병영생활 개선, 여성장군 탄생, 성평등 의식제고 등의 구체적이고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군대 문제가 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에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와 관련해 군대내 성폭력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한 해동안 몇건의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피해자 비난과,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피해사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다. 또한 용기를 내어 고소한 극소수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대내 성폭력은 군대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막에 가려있어 그 실태나 심각성을 전 혀 알 수 없는 채 남겨져있습니다. 결국, 지난 7월에 일어난 성폭력 피해자 투신자살 등의 극단적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우리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군대내 성폭력에 대해서는 떠도는 소문으로, 하나의 가쉽거리로 치부되곤했었는데 이 사건은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군대내 성폭력이 “성폭력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는 남자들끼리의 장난삼아 한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정작 피해자에게는 목숨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군대내 성폭력은 전체 5,000여 회 상담 중 단지 6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군인의 신분으로 민간 상담소에 상담을 하기까지 접근성의 어려움이나, 군내에서 받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휴가 중이나 제대 후에 시도한 이 6건의 상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사건의 유형도 다양합니다. (1) 내무반내에서 상관에 의한 성폭력, (2) 밤에 보초 근무 중 일어나는 성폭력, (3) 군대내 파견된 종교관계자의 사병들 성폭력, (4) 회식중 상관에 의한 여군장교의 성추행 등입니다. 이들 사례에서 군대내 성폭력은 흔히 지적되는 동성애에 기반한 성문화란이 아니라, 군대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권력관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성인식이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기형적으로 발전해오며 생기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휴가나와서 성폭력한 사건을 고소한 경우, 가해자는 바로 군법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인인 피해자는 전혀 그 사건의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군대내 성폭력은 피해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끼게 하지만, 정작 내무반 분위기는 “남자들만 있는 집단에서는 혼이 있을 수 있는 일”

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이미 남성들만의 집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구조내에서 계급을 무시한 성차별로 인한 성폭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신고와 구제절차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한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는 군내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수사와 해결이 될지 의문이라며 매우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제기로 이유로 후에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장기복무에 나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두려움을 토로하곤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 발생한 여군장교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병의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가혹행위 등이 벌어지기 쉬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 후유증으로 항문성교를 당한 한 장병은 “제 성기가 계속 썩어들어 가는 것만 같아요 여러 병원을 가서 진찰을 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들은 앞으로 건강한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이와같은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가장 저열한 수준의 인권유린입니다. 둘째, 군대내 성폭력의 발생빈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힘의 관계에 의한 성폭력은 사회로 나올 경우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째, 동성애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폭력으로 오해되어 단순 병리현상으로 이해되거나 반 동성애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군대 내 성폭력은 사회와 분리된 폐쇄적인 군대내에서 발생하고, 남성들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남성 전부를 부정해야 하는 힘든 과정이며, 친고죄라는 점, 무엇보다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군대내 특수성까지 겹쳐 그 신고와 대처가 일반 사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군내내 성폭력의 실상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군대내 성폭력문

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국방부에서 실시한 전 제대별 정밀진단 결과는 65만 육군 중 성폭력피해는 24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보고용 자료로 전혀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입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몇차례 <성군기문란 방지를 위한 지침>들을 발표하는 등 군대내 성폭력 문제를 대처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는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民間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군대내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 등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필수입니다.

이렇듯 심각한 군대내 성폭력 문제도 민간인 국방감독관 제도가 마련된다면 체계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리라고봅니다. 안정애 발제가께서 소개하신 독일의 국방관 제도에서 국방감독관의 권한인 정보요구권 및 문서접수권, 청원자 진술 청취권, 군부대 방문권, 해당 기관에 문제 시정 요구 및 권고 등을 군대내 성폭력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군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대한민국 군인들이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결코 누구도 성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건강한 군대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토론>

군폭력의 근절과 군사법제도 개혁

- 이 행 규 (변호사)

1. 군폭력 및 군사법제도의 실태

가. 사회변화와 군대문화의 변화

나. 군폭력 사건의 지속적 발생

다. 유형

(1) 병상호간

(2) 간부와 병간

(3) 간부상호간

라. 형태

(1) 육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2) 위법한 폭력(군기교육대) / 적법한 폭력(얼차려, 영창)

마. 사망사고 수의 감소 대비 자살율의 증가

바. 해결되지 않은 군의문사 문제 - 외부 조사기구의 필요성

사. 군사법제도의 문제

(1) 군사법권(군검찰, 군사법원)의 지휘권 종속 및 남용 우려

(2) 군법무조직의 내부 개혁

(3) 군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의 감시 및 견제

2. 제언

가. 양성 및 교육과정에서의 인권 교육 의무적 실시 - 인식의 전환

(1) 군인의 인권 보장 - 군의 특수성

(2) 인권교육 담당 인력의 교육 및 준비 - 국가인권위원회

(3) 간부양성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인권교육 실시/진급에 따른 단계별 인권

보수교육

- (4) 병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의 의무적인 인권 교육 실시 / 진급(내무반장)에 따른 단계별 인권 보수교육

나.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적 실시 및 군사법제도의 개혁

- (1) 헌병 / 기무 / 법무 양성 과정 보수교육 과정에서의 인권 교육 실시

(2) 군사법제도의 개혁

(가) 군검찰의 독립 및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지휘관 및 내부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 헌병 및 기무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선 / 군사법원 조직과의 실질적 분리

(나) 공정한 군사재판 및 인권 보장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폐지 / 심판관제도의 폐지 / 군사법원 조직의 상향 정비 - 사단급 보통군사법원 폐지 / 군판사의 독립성 보장 / 장기적인 군사법원 폐지 및 군사법원 관할 축소 검토 / 즉결심판제도의 폐지 / 징계영창제도의 폐지

다. 부대별 인권담당관제의 도입 - 교육 및 일정한 권한 부여

라. 국방감독관제의 도입 고려

- (1) 군에 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 장치의 필요성
(2)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관계 - 인권위 확대개편론
(3) 국방감독관제의 도입의 의의 - 민주적 정당성,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
(4) 관련 국방관계법령의 동시 개정

<토론>

독고순(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군내 인권 문제가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3·4년 전에 비해 폭행 사고나 자살 등의 공식 건수가 20% 정도 줄고 있고, 또 구타 및 가혹 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인식 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의 인권 개선 노력과 맞물려, 또 평균적 수준이 어떠하다는 인식은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 본질적 관점으로 부적합하다는 특성 때문에, 군 인권 문제는 앞으로 많은 토론거리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군 인권이 사회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 임무의 절대적 성격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을 명예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과 임무가 주어지고 이로 인해 일시적인 인격 존엄성의 훼손이 용인된다. 두번째는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등 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군 부대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오지에 위치해 있으며, 더욱이 외부 생활과 차단된 채 협소한 생활 공간에서 통제된 내무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 개인적인 비밀 보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단조롭고 획일적인 환경과 업무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 징집제 하에서 다양한 계층과 성격의 병사들이 뒤섞일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이다.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 풍토 속에서 성장한 신세대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이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군은 그간 사건 사고가 발생과 관련하여 촉각을 곤두세워 왔지만, 다분히 관리 차원에 집중되었으며 실제로 병사들의 삶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발표된 육군의 종합 대책은 그간의 군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선진적으로 가져가 보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나, 관련 군 형법이나 상담 기능의 강화, 자문위 운영 등 종합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2001년도에도 국방부는 성적 군기 문란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 발전되도록 하는 일은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군 인권과 관련하여 구타 및 가혹 행위, 자살, 그리고 성추행 등과 같이 극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신체적 자유에 대해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되었다.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군내 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 실증적으로 진단, 조사하는 것이다. 또 지휘관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사고 처리의 책임을 문도록 하는 방식으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극심하게 침해되는 인권 회복 뿐 아니라, 군에서의 인격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군 인권을 접근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한 억제 차원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휴식하고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제도 등의 개선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병영 시설이나 제도와 같은 복무 여건에 대해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 외에도 군내 의사소통의 문제는 중요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사고 예방이나 대안 마련 등에서 병사들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해 현재 NGO등 민간 부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많은 군 관련 법률 제정, 개정이나 제도 도입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군은 보다 열린 자세, 적극적인 태도로, 민간 부문은 좀 더 종합적인 견지에서 전문적인 조언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본다. (끝)

<참조자료>

군 기강 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질의(2003.8.28)에 대한 국방부 회신

군을 사랑하시고 장병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단체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각종 사고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가.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장병들이 군복무 기간 중 아무 사고 없이 유익한 병영 생활을 함으로써, 선진시민 육성의 도장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가. 이를 위해 국방개혁 과제로 병영 내 잘못된 관행을 균절하고, 병영시설 개선, 장병들의 여가 선용 및 자기계발 등 자율에 의한 병영생활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다. 이러한 병영문화 쇄신과 함께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 ① 장병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군 생활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토록 하고
- ② 군 복무 부적응에 따른 자살, 군무이탈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복무 부적응자 관리(인성검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고충신고제도, 가정과 연계 된 신상관리 등)를 강화하고 있음
- ③ 또한, 위험예지훈련 생활화와 주기적인 부대진단을 통해 부대활동간 사고 취약요인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
- ⑤ 병영내 스트레스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음

라. 이와 같은 활동으로 자살 및 군무이탈 사고는 현격히 감소추세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강구할 것임

2. 군대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가. 장병들의 성 윤리 의식 함양과 성 관련 사고예방을 위해 교육기관(양성·보수교육 과정)에서는 정규과목으로 편성 교육하고 실무부대에서 분기단위로 교육을 실시중임

나. 교육 내용은 성 기본 교육(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 성 군기 위반사고방지(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대책과 피해신고 절차, 양성평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다. 교육방법은 국내 성교육 교관과 사회 전문강사 초빙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각종 교육자료(책자, VTR, CD)를 제작 활용 중에 있음

3. 군 옴부즈만 제도나 군 관련 감독시스템을 마련할 의향

가. 현재 군내 폭력, 사망, 성폭력 사건 등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나. 장병들의 고충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재정비하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운용중이며

다. 고충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제기능이 연계하여 최단시간에 해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 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법규에 의거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음

라. 또한 각종사고 발생시 투명한 수사를 위해 법규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참여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마. 이와 같이 각종 고충과 사고에 대한 조치체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현 시스템의 효과적 운용을 우선적으로 강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옴부즈만 제도나 군 관련 감독 시스템제 도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함

4. 부대정밀진단 결과의 근거와 조사 과정의 결과

가. 부대정밀진단은 국방부계획에 의거 전군이 실시한 것으로 부대진단은 면담, 설문, 관찰 등 제방법을 활용하여 병영저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진단활동을 실시하였음

나. 부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군기 위반사고

구 분	적 발			조 치			
	계	성희롱	성추행	계	형사입건	징계	수사진행중
전(인원)	32	18	14	32	7	18	7

- 구타 및 가혹행위

구분	적발	조 치			
		계	형사입건	징계	군기교육
인원	316	316	10	123	183

5. 자질저열 간부의 기준과 판단은

가. 자질저열 간부의 기준은 군인사법 시행령(제49조), 시행규칙(56조)에 해당하는 자이며

나. 이의 판단은 군인사법시행규칙(제58조~61조)에 의거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됨

6. 성 성향 프로그램 개발 관련 국방부 입장과 프로그램 내용

가. 장병들의 성에 관한 인식을 분석, 이를 성교육과 예방 활동에 활용하기 위

하여 인성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는 성군기 위반사고 예방활동의 지휘참고 자료로만 활용토록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조장과는 관계없음

나. 성관련 인성검사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과 비용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활용하고 있는 KHTP(집, 나무, 사람, 그림검사), MSCT(문장완성 검사), 표준 인성검사에 성적성향 식별 문항을 추가하는 방향에서 보완을 추진 중에 있음

7. 내부공익신고센터의 재정비 내용과 소원수리제도와의 관계

가. 내부공익신고센터는 ① 부정·부패 등 각종 비위 관련 사항, ② 구타 및 가혹 행위 등 각종 사건·사고 관련 사항 ③ 기타 국방부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에 대한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

나.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전제대별에 설치하고, 신고방법은 인트넷, 인트라넷, 전화, 선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신고체계를 유지

* 현재 제대별, 기능별(현병, 기무, 감찰, 군종 등)로 신고체계 유지

다. 내부공익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 신고내용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음

라. 소원수리 제도와의 차이점은 본인이 고충을 느끼거나 인지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고 거시적인 개념에서는 내부공익신고센터의 범주에 포함 되겠음

8. 피해자 보호 방법

가. 구타 및 가혹행위 피해신고로 인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를 엄격히 하고 있음

나. 피해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분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타 및 가혹행위의 피해 정도, 관련자의 처벌,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부대 및 보직을 조정하고 있음

9. 병영생활행동강령을 일반병사들에게 어떻게 교육 하는가

가. 병영생활 행동강령상 병상호간의 관계 부분에 대한 교육은

① 군인의 계급 서열과 명령권의 관계 ② 일반병사의 계급 서열과 명령권의 관계 ③ 분대장의 지위와 명령권의 관계 ④ 일반병사가 명령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등을 교육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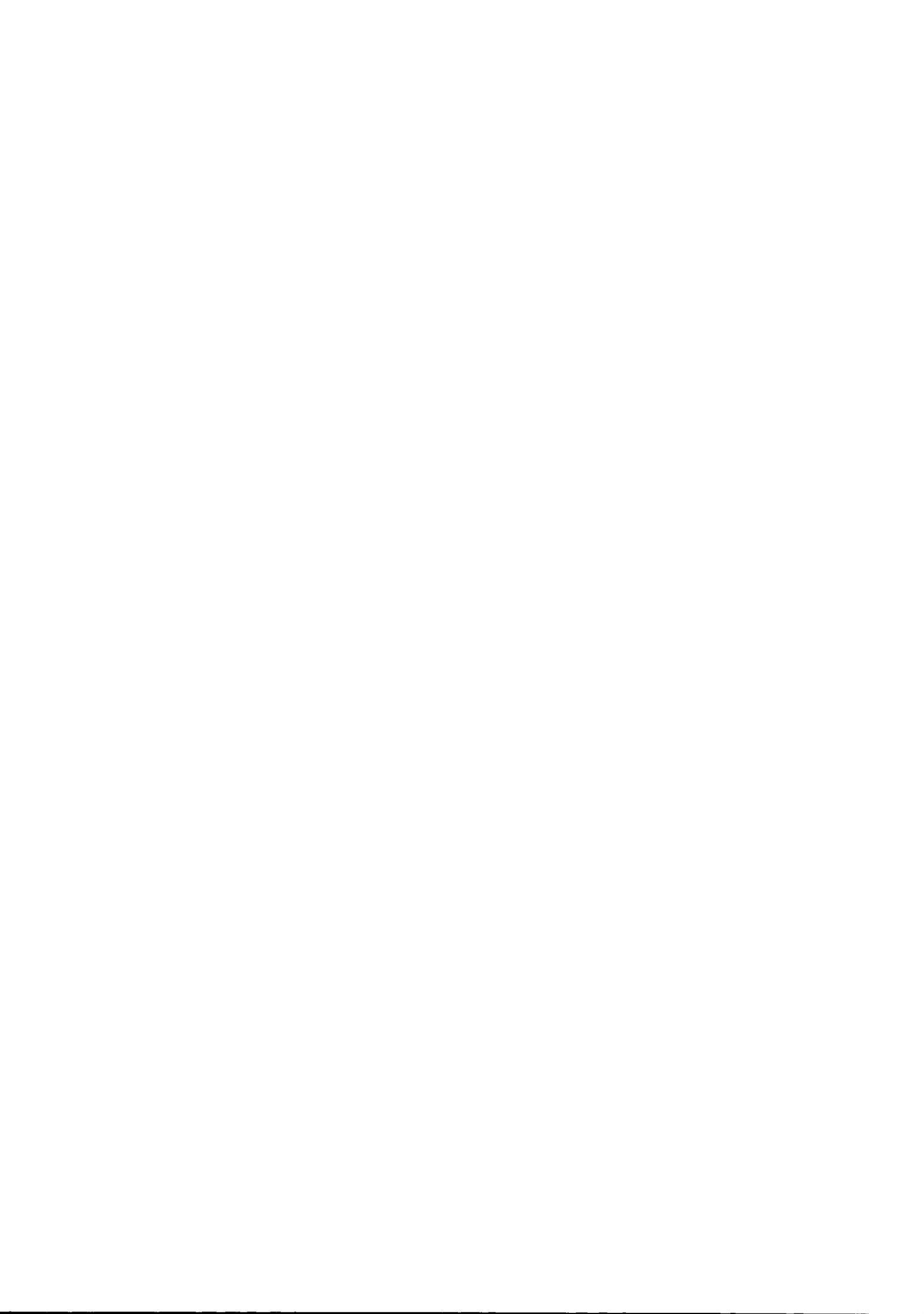
나. 이와함께 기본적으로 병상호간 '존중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인권의 존엄성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0. 성폭력에 대한 국방부 관점, 외부 민간단체와 협력 관계

가. 국방부에서는 성관련 사고방지를 위해 성군기위반사고 방지지침을 국방부 훈령으로 제정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군내 성관련 사고의 총칭을 '성군기 위반사고'라고 정의하였음

이는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용어로 '성군기 위반사고'는 세부적으로 성희롱, 성폭력범죄(성추행, 성폭행)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로 분류하고 있음

나. 훈령 제정시 민간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제정하였으며, 현재도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안내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을곳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input type="checkbox"/> 연2만원 <input type="checkbox"/> 연3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input type="checkbox"/> 통일과제 <input type="checkbox"/> 국방과제 <input type="checkbox"/> 평화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갈등해결 <input type="checkbox"/> 평화심성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발행 <input type="checkbox"/> 스터디모임 <input type="checkbox"/> 평화축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가입일	200 년 월 일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60 전송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 (서울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